

재택 서비스의 한도액에 대하여

이용 한도액

재택 서비스에는 요지원·요개호 상태 구분별로 1개월당 이용 가능한 서비스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
재택 서비스 종류 (개호예방 서비스 포함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 방문개호(홈헬프 서비스) | 10 단기입소 요양개호
(노인보건시설 또는 요양병상 등에서 쇼트스тей) |
| 2 정기순회·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| 11 단기이용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
(그룹홈에서 쇼트스тей) |
| 3 방문목욕개호 | 12 단기이용 (지역밀착형)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|
| 4 방문간호 | 13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|
| 5 방문재활훈련 | 14 치매대응형 통원개호 |
| 6 통원개호(데이서비스) | 15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 |
| 7 통원재활훈련(데이케어) | 16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 (복합형 서비스) |
| 8 복지용구 대여 | |
| 9 단기입소 생활개호
(특별양호노인홈 등에서 쇼트스тей) | |

※재택 요양관리 지도,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개호·(지역밀착형)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, 지역밀착형 개호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에 대해서는 이용 한도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그 외, 이용 한도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산도 있습니다.

요 개 호 도	1개월당 이용 한도액단위수	1개월당 이용 한도액 (1단위 11.12엔으로 계산한 경우)	이용자 부담액	
			10% 부담	20% 부담
요 지원 1	5,003단위	55,700엔 정도	5,570엔 정도	11,140엔 정도
요 지원 2	10,473단위	116,500엔 정도	11,650엔 정도	23,300엔 정도
요 개 호 1	16,692단위	185,700엔 정도	18,570엔 정도	37,140엔 정도
요 개 호 2	19,616단위	218,200엔 정도	21,820엔 정도	43,640엔 정도
요 개 호 3	26,931단위	299,500엔 정도	29,950엔 정도	59,900엔 정도
요 개 호 4	30,806단위	342,600엔 정도	34,260엔 정도	68,520엔 정도
요 개 호 5	36,065단위	401,100엔 정도	40,110엔 정도	80,220엔 정도

※1단위당 단가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며 ①·②·③·④·⑬은 11.12엔, ⑤·⑦·⑨·⑭·⑮·⑯은 10.88엔, ⑥·⑩·⑪·⑫는 10.72엔, ⑧은 10엔.